

제30회 (사)대한하키협회 회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안내문

2020. 12. 15. (사)대한하키협회

현재 기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및 (사)대한하키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예정(안)에 따라 작성 하였으며,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사)대한하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회장선거 주요 일정(안)

일자	주요내용	관련조항	비고
12. 9.(수)	후보자등록의사 제출 (임기만료 전 50일 까지)	제11조제2항	
12. 14.(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기만료 전 40일 까지)	제3조제1항	
12. 21.(월) & 22.(화)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회장 임기만료일 전 30일 까지)	제5조제1항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12. 28.(월)	단체별 선거인 추천마감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5조제3항	
12. 28.(월)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 까지)	제13조제4항	
12. 29.(화)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제16조제3항	
12. 30.(수)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명부 작성 후 즉시)	제9조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12. 31.(목)	선거인 명부 통보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제10조제1항	
12. 31.(목) ~ 1. 2.(토)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3일간)	제10조제2항	
12. 31.(목) ~ 1. 1.(금)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기간 개시일 2일부터 2일 간)	제13조	
1. 2.(토)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제10조제4항	등록 후보자
1. 4.(월)	선거인 명부 확정(열람기간 종료일 다음 날) 선거인 등록공고(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제10조제3항 제15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1. 4.(월) ~ 11.(월)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	제19조	
1. 12.(화)	회장선거일(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제16조	임기만료 10일 전 완료
1. 28.(목)	임기만료일		
1. 29.(금)	정기총회일		

□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 제출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제2항]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 대상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대한하키협회 또는 전국규모연맹체, 시·도 협회, 시·군·구 협회 회장 포함 비상임 임원

※ 상기 체육단체에 소속되지 않은자는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불요.

- 제출기한: 2020. 12. 9.(수) 18:00*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 (사)대한하키협회 사무처 접수 확인 시간 기준

- 제출양식: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대한하키협회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필첨

<임원확인서 발급기관·방법>

· 발급기관: 소속단체(대한하키협회, 전국규모연맹체, 시·도 협회, 시·군·구 협회)

· 신청방법: (대한하키협회) 본인 방문(유선 등으로 사전신청) ☎02-420-4267

· 처리기한: 단체 상황에 따라 발급 지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또는 확인하여야 함.

- 제출처: (사)대한하키협회 사무처(☎02-420-426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대한하키협회 301호)

○ [제11조제7항] 사직서 제출

- 대상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대한하키협회 또는 전국규모연맹체, 시·도 협회, 시·군·구 협회 상임 임원 및 직원 / 대한체육회 임원 및 직원, 다른 중앙회원종목

단체 임원 및 직원, 시·도체육회 임원 및 직원

- 제출기한: 2020. 12. 9.(수)*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 제출양식: 사직원, 해당단체에 문의

- 제출처: 소속단체 사무처

□ 후보자등록

○ 기 간: 2020. 12. 31.(목) ~ 1. 1.(금)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 신청처: 대한하키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

대한하키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30대 대한하키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대한하키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하키협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대한하키협회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대한하키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20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하키협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